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요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심의절차를 개편하고 인증심의위원회를 인증운영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이에 맞춰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등을 정하고,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0년부터 시행한 우수 물류신기술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우수 물류신기술을 적용한 스마트물류센터의 경우 인증 평가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심사 신청이 있는 경우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 등

을 결정하도록 재심사 절차를 규정(안 제4조)

나. 인증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인증운영위원회로 변경함(안 제2조제3항, 제4조제3항, 제5조,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

다. 인증심사단 전문인력 구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등 인증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2항)

라. 인증심사단 전문인력의 자격에 IT 등 첨단기술 관련 단체·기업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를 추가하고, 현행 경력 기준을 일부 상향함(안 제6조)

마.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평가항목에 가산점 항목을 신설하고, 우수 물류신기술 적용시 최대 50점을 부여함(안 별표 1 및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

- 전자우편 : sun92725@korea.kr

- 팩스 : 044-201-560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전화 044-201-40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